|  |  |  |
| --- | --- | --- |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등 8부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2019년 4월 23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통과)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1.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개정**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공허가증 발급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 해당 건축 공사의 토지 사용 비준 수속 기 완료
2. 법에 따라 건설공사규획허가증 취득을 필요로 할 경우 건설공사규획허가증 기 취득
3. 철거를 필요로 할 경우 철거 진도가 시공 요구에 부합
4. 건축시공기업 기 확정
5. 시공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금계획, 시공도면과 기술자료
6.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

신청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건설행정주관부서는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내에시공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1.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개정**
2.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공사건설소방기술표준에 따라 소방설계를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 소방설계 심사검수 제도를 시행한다.”1.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원 주택및도농건설주관부서가 규정한 특수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건설업체는 소방설계 서류를 주택및도농건설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주택및도농건설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심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전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기타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건설업체는 시공허가증 발급 신청 시 또는 착공보고서 비준 신청 시 시공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소방설계 도면과 기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특수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소방설계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건설업체, 시공업체는 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설업체가 기타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시공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소방설계 도면과 기술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관부서는 시공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착공보서를 비준하여서는 아니된다.”1.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원 주택및도농건설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응당히 소방검수를 신청하여야 하는 건설공사가 준공된 후 건설업체는 주택및도농건설주관부서에 소방검수를 신청하여야 한다.전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기타 건설공사의 건설업체는 검수 이후 주택및도농건설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비안(備案)하여야 하며 주택및도농건설주관부서는 추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법에 따라 응당히 소방검수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 소방검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소방검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사용에 투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기타 건설공사로 법에 따라 실시된 추출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1.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설공사 설방설계 심사, 소방검수, 비안(備案) 및 추출검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주택및도농건설주관부서가 규정한다.”1.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택도농건설주관부서, 소방구조기구 및 그의 직원은 법에 정해진 직권과 절차에 따라 소방설계 심사, 소방검수, 비안(備案) 추출검사와 소방안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정성, 엄격성, 문명성, 고효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주택및도농건설주관부서, 소방구조기구 및 그의 직원은 소방설계 심사, 소방검수, 비안(備案) 추출검사 및 소방안전 검사 등을 실시함에 있어 비용을 수취하거나 직무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직무를 이용하여 이용자, 건설업체에게 소방제품의 브랜드, 판매업체 또는 소방기술서비스기구, 소방시설 시공업체를 지정하거나 변칙적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1. 제57조, 제71조 제1항의 “공안기관 소방기구”를 “주택및도농건설주관부서, 소방구조기구”로 개정하며 제71조의 “심사확인(審核)”을 “심사(審査)”로 개정하고 제2항의 “건설”을 삭제한다.
2.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할 경우 주택및도농건설주관부서, 소방구조기구가 각자의 직권에 따라 시공 중단, 사용 중단 또는 조업•영업 중단을 명하고 3만위안 이상 30만위안 위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1. 법에 따라 응당히 소방설계 심사를 거쳐야 하는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법에 따라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시공하는 경우;
2. 법에 따라 응당히 소방검수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소방검수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소방검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사용에 투입하는 경우;
3. 이 법 제13조에 규정한 기타 건설공사로 검수 이후 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추출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음에도 사용을 중단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소방안전검사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검사 결과 소방안전 요구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공중집결장소를 무단으로 사용•영업에 투입하는 경우.

건설업체가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검수 이후 주택및도농건설주관부서에 비안(備案)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및도농건설주관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5,000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1. 제59조의 “시정 또는 시공 중단을 명하고”를 “주택및도농건설주관부서가 시정 또는 시공 중단을 명하고”로 개정한다.
2.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법에 규정한 행정처벌은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및도농건설주관부서, 소방구조기구가 각자의 직권에 따라 결정한다.시공 중단, 사용 중단, 조업•영업 중단 명령을 받은 경우 시정 조치를 취한 후 결정을 내린 부서•기구에 보고하여 검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시공•사용•생산•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당사자가 소정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조업•영업 중단, 사용 중단, 시공 중단 결정을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결정을 내린 부서•기구가 강제집행한다.조업•영업 중단 명령으로 경제 및 사회 생활에 큰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주택및도농건설주관부서 또는 구급관리부서는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본급 인민정부가 법에 의거하여 결정하도록 한다.”1. 제4조, 제17조, 제24조, 제55조의 “공안기관 소방기구”를 “소방구조기구”로 개정하고 “공안부서”, “공안기관”, “공안부서 소방기구”를 “구급구조기구”로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의 “공안기관 및 그 소방기구”를 “구급관리부서 및 소방구조기구”로 개정하고, 제7항의 “공안기관”을 “공안기관, 구급관리”로 개정한다. 제15조, 제25조, 제29조, 제40조, 제42조, 제45조, 제51조, 제53조, 제54조, 제60조, 제62조, 제64조, 제65조의 “공안기관 소방기구”를 “소방구조기구”로 개정한다.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6조, 제49조의 “공안소방대”를 “국가종합소방구조대”로 개정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 개정**

제3조 제3항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조정함과 더불어 “(2) 수도•난방•가스 등 공공사업 서비스 중단과 연관된 경우”로 개정한다.1. **<중화인민공화국 도농규획법> 개정**

제3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출양 방식으로 국유토지 사용권을 취득하는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건설업체는 건설 프로젝트 비준•허가•비안(備案) 문건을 취득하고 국유토지사용권출양계약을 체결한 후 도시•현(縣) 인민정부 도농규획주관부서로부터 건설용지규획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1.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법> 개정**

제3조에 다음과 같이 제4호를 추가한다.“(4) 구급•구조 전용 번호판을 부착한 국가종합소방구조 차량과 국가조합소방구조 전용 선박”1.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
2.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생산경영 활동 과정에서 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전용권 취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상표국에 상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악의적인 상표등록 신청은 기각하여야 한다.”1. 제19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상표대리기구는 의뢰인이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상표가 이 법 제4조, 제15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표임을 인지하였거나 응당히 인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의뢰를 수임하여서는 아니된다.”1.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초보심사 결정이 공고된 상표에 대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권리자•이해관계인은 해당 상표가 이 법 제13조 제2항 및 3항,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그 누구든지 해당 상표가 이 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표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이의가 없을 경우 등록을 허가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하며 이를 공고한다.”1. 제4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미 등록된 상표가 이 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거나 사기 또는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등록된 경우 상표국은 해당 등록상표의 무효를 선고한다. 기타 단체 또는 개인은 상표평심위원회에 해당 등록상표의 무효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1. 제63조 제1항의 “1배 이상 3배 이하”를 “1배 이상 5배 이하”로 개정하고 제3항의 “300만위안 이하”를 “500만위안 이하”로 개정하며 다음 내용을 제4항, 제5항으로 추가한다.

“인민법원은 상표분쟁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등록상표가 표시된 위조상품의 소각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위조상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자재•공구에 대해 소각처리를 명하며 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상기 원자재•공구의 유통 금지를 명하고 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등록상표가 표시된 위조상품을 등록상표 제거 조치만 취한 후 유통시키는 것을 금지한다.”1. 제68조 제1항을 “이 법 제4조,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로 개정하고 다음 내용을 제4항으로 추가한다.

“악의적으로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벌을 내린다. 악의적으로 상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내린다.”1.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개정**
2.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상업비밀 침해 행위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1. 절도, 뇌물 상납, 사기, 협박, 전자침투 또는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상업비밀을 획득하는 행위;
2. 제(1)호의 수단으로 획득한 권리자의 상업비밀을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3.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권리자의 상업비밀에 관한 요구를 위반하여 그가 확보한 상업비밀을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4.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권리자의 상업비밀에 관한 요구를 위반하여 권리자의 상업비밀을 획득,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타인을 교사, 회유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경영자 이외의 기타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전 항에 열거된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상업비밀 침해 행위로 간주한다.제3자가 상업비밀 권리자의 직원, 전(前) 직원 또는 기타 단체, 개인이 실시하는 이 조 제1항에 열거된 위법행위를 명백히 인지하였거나 응당히 인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업비밀을 획득,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상업비밀 침해 행위로 간주한다.이 법에서 상업비밀이라 함은, 대중에 알려지지 않았고 상업적 가치가 있으며 권리자에 의해 비밀유지 조치가 취해진 기술정보, 경영정보 등 상업정보를 지칭한다.”1.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초래된 경우 법에 의거하여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경영자는 타인의 부정당경쟁 행위로 인해 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가 가해진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부정당경쟁 행위로 인해 경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액수는 권리침해로 인해 초래된 실제 손실액에 따라 확정한다. 실제 손실액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권리침해자가 권리침해 행위로 인해 획득한 이익에 따라 확정한다. 경영자가 악의적으로 상업비밀 침해 행위를 실시하였고 법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상기 방법으로 확정된 액수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배상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 배상액수에는 경영자가 권리침해 행위를 저지하는데 발생한 합리적인 지출도 포함시켜야 한다.경영자가 이 법 제6조,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권리를 침해당한 권리자의 실제 손실액과 권리침해자가 획득한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이 권리침해 행위의 법 위반 정도에 근거하여 권리자에게 500만위안 이하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다.”1.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영자 또는 기타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이 법 제9조의 규정을 어기고 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가 위법행위 중단을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10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법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50만위안 이상 50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1. 다음 내용을 제32조로 추가한다.

“상업비밀 침해 사건의 민사 심판 절차에서 상업비밀 권리자가 초보적 증거를 제출하여 그가 주장하는 상업비밀에 대해 비밀유지 조치를 취한 사실을 증명하였고 상업비밀을 침해당한 사실을 합리적으로 표명한 경우 권리침해 혐의에 연루된 자는 권리자가 주장하는 상업비밀이 이 법상의 상업비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여야 한다.상업비밀의 권리자가 초보적 증거를 제출하여 상업비밀을 침해당한 사실을 합리적으로 표명하였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증거를 제출한 경우 권리침해 혐의에 연루된 자는 그가 상업비밀 침해 행위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1. 권리침해 혐의에 연루된 자에게 상업비밀을 획득할 수 있는 채널 또는 기회가 있음을 표명하는 증거가 있고 그가 사용한 정보가 해당 상업비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2. 권리침해 혐의에 연루된 자가 상업비밀을 이미 누설, 사용하였거나 누설, 사용할 위험이 있음을 표명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
3. 권리침해 혐의에 연루된 자가 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을 표명하는 기타 증거가 있을 경우.”
4.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개정**
5. 제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정허가의 설정과 실시는 공개, 공평, 공정, 비차별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행정허가와 관련된 규정은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하지 아니한 규정을 행정허가 실시 근거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허가의 실시와 결과는 국가비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연관된 경우를 제외하고 응당히 공개하여야 한다. 행정기관과 그의 직원, 전문가 평심 등 절차에 참여하는 자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국가안전, 중대 사회공공익과 연관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이 제출한 상업비밀, 비공개정보 또는 비밀적 비지니스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신청인의 상기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신청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한다.법에 정해진 조건, 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 신청인은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행정기관은 그 누구도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제31조에 다음 내용을 제2항으로 추가한다.

“행정기관과 그의 직원은 기술이전을 행정하가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아니되며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기술이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1.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정기관과 그의 직원이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할 경우 그의 상급 행정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시정을 명한다. 법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해당 업무를 집적 담당한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린다.1. 법에 정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행정허가신청의 접수를 거절하는 경우;
2. 사무공간에 법에 따라 응당히 공시하여야 하는 자료를 공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행정허가를 접수, 심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해관계인에 대한 법정(法定)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가 미비하거나 법정(法定) 형식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보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신청인에게 일괄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신청인이 제출한 상업비밀, 비공개정보 또는 비밀적 비지니스 정보를 불법으로 누설하는 경우;
6. 기술이전을 행정허가 취득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경우;
7. 법에 따라 행정허가신청 접수 거절 또는 기각의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8. 법에 따라 응당히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사안임에 불구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의 개정 조항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기타 법률의 개정 조항은 이 결정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농규획법>,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은 이 결정에 근거하여 해당 내용을 수정한 후 다시 공포한다. |  |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等八部法律的决定**（2019年4月23日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次会议通过） 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次会议决定：1. **对《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作出修改**

 将第八条修改为：“申请领取施工许可证，应当具备下列条件： “（一）已经办理该建筑工程用地批准手续； “（二）依法应当办理建设工程规划许可证的，已经取得建设工程规划许可证； “（三）需要拆迁的，其拆迁进度符合施工要求； “（四）已经确定建筑施工企业； “（五）有满足施工需要的资金安排、施工图纸及技术资料； “（六）有保证工程质量和安全的具体措施。 “建设行政主管部门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七日内，对符合条件的申请颁发施工许可证。” **二、对《中华人民共和国消防法》作出修改** （一）将第十条修改为：“对按照国家工程建设消防技术标准需要进行消防设计的建设工程，实行建设工程消防设计审查验收制度。” （二）将第十一条修改为：“国务院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规定的特殊建设工程，建设单位应当将消防设计文件报送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审查，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依法对审查的结果负责。 “前款规定以外的其他建设工程，建设单位申请领取施工许可证或者申请批准开工报告时应当提供满足施工需要的消防设计图纸及技术资料。” （三）将第十二条修改为：“特殊建设工程未经消防设计审查或者审查不合格的，建设单位、施工单位不得施工；其他建设工程，建设单位未提供满足施工需要的消防设计图纸及技术资料的，有关部门不得发放施工许可证或者批准开工报告。” （四）将第十三条修改为：“国务院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规定应当申请消防验收的建设工程竣工，建设单位应当向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申请消防验收。 “前款规定以外的其他建设工程，建设单位在验收后应当报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备案，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应当进行抽查。 “依法应当进行消防验收的建设工程，未经消防验收或者消防验收不合格的，禁止投入使用；其他建设工程经依法抽查不合格的，应当停止使用。” （五）将第十四条修改为：“建设工程消防设计审查、消防验收、备案和抽查的具体办法，由国务院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规定。” （六）将第五十六条修改为：“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消防救援机构及其工作人员应当按照法定的职权和程序进行消防设计审查、消防验收、备案抽查和消防安全检查，做到公正、严格、文明、高效。 “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消防救援机构及其工作人员进行消防设计审查、消防验收、备案抽查和消防安全检查等，不得收取费用，不得利用职务谋取利益；不得利用职务为用户、建设单位指定或者变相指定消防产品的品牌、销售单位或者消防技术服务机构、消防设施施工单位。” （七）将第五十七条、第七十一条第一款中的“公安机关消防机构”修改为“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消防救援机构”；将第七十一条中的“审核”修改为“审查”，删去第二款中的“建设”。 （八）将第五十八条修改为：“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消防救援机构按照各自职权责令停止施工、停止使用或者停产停业，并处三万元以上三十万元以下罚款：“（一）依法应当进行消防设计审查的建设工程，未经依法审查或者审查不合格，擅自施工的；“（二）依法应当进行消防验收的建设工程，未经消防验收或者消防验收不合格，擅自投入使用的；“（三）本法第十三条规定的其他建设工程验收后经依法抽查不合格，不停止使用的；“（四）公众聚集场所未经消防安全检查或者经检查不符合消防安全要求，擅自投入使用、营业的。 “建设单位未依照本法规定在验收后报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备案的，由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责令改正，处五千元以下罚款。” （九）将第五十九条中的“责令改正或者停止施工”修改为“由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责令改正或者停止施工”。 （十）将第七十条修改为：“本法规定的行政处罚，除应当由公安机关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的有关规定决定的外，由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消防救援机构按照各自职权决定。 “被责令停止施工、停止使用、停产停业的，应当在整改后向作出决定的部门或者机构报告，经检查合格，方可恢复施工、使用、生产、经营。“当事人逾期不执行停产停业、停止使用、停止施工决定的，由作出决定的部门或者机构强制执行。“责令停产停业，对经济和社会生活影响较大的，由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或者应急管理部门报请本级人民政府依法决定。” （十一）将第四条、第十七条、第二十四条、第五十五条中的“公安机关消防机构”修改为“消防救援机构”，“公安部门”、“公安机关”、“公安部门消防机构”修改为“应急管理部门”；将第六条第三款中的“公安机关及其消防机构”修改为“应急管理部门及消防救援机构”，第七款中的“公安机关”修改为“公安机关、应急管理”；将第十五条、第二十五条、第二十九条、第四十条、第四十二条、第四十五条、第五十一条、第五十三条、第五十四条、第六十条、第六十二条、第六十四条、第六十五条中的“公安机关消防机构”修改为“消防救援机构”；将第三十六条、第三十七条、第三十八条、第三十九条、第四十六条、第四十九条中的“公安消防队”修改为“国家综合性消防救援队”。 **三、对《中华人民共和国电子签名法》作出修改** 删去第三条第三款第二项；将第三项改为第二项，修改为：“（二）涉及停止供水、供热、供气等公用事业服务的”。 **四、对《中华人民共和国城乡规划法》作出修改**将第三十八条第二款修改为：“以出让方式取得国有土地使用权的建设项目，建设单位在取得建设项目的批准、核准、备案文件和签订国有土地使用权出让合同后，向城市、县人民政府城乡规划主管部门领取建设用地规划许可证。” **五、对《中华人民共和国车船税法》作出修改** 第三条增加一项，作为第四项：“（四）悬挂应急救援专用号牌的国家综合性消防救援车辆和国家综合性消防救援专用船舶”。 **六、对《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作出修改** （一）将第四条第一款修改为：“自然人、法人或者其他组织在生产经营活动中，对其商品或者服务需要取得商标专用权的，应当向商标局申请商标注册。不以使用为目的的恶意商标注册申请，应当予以驳回。” （二）将第十九条第三款修改为：“商标代理机构知道或者应当知道委托人申请注册的商标属于本法第四条、第十五条和第三十二条规定情形的，不得接受其委托。” （三）将第三十三条修改为：“对初步审定公告的商标，自公告之日起三个月内，在先权利人、利害关系人认为违反本法第十三条第二款和第三款、第十五条、第十六条第一款、第三十条、第三十一条、第三十二条规定的，或者任何人认为违反本法第四条、第十条、第十一条、第十二条、第十九条第四款规定的，可以向商标局提出异议。公告期满无异议的，予以核准注册，发给商标注册证，并予公告。” （四）将第四十四条第一款修改为：“已经注册的商标，违反本法第四条、第十条、第十一条、第十二条、第十九条第四款规定的，或者是以欺骗手段或者其他不正当手段取得注册的，由商标局宣告该注册商标无效；其他单位或者个人可以请求商标评审委员会宣告该注册商标无效。” （五）将第六十三条第一款中的“一倍以上三倍以下”修改为“一倍以上五倍以下”；第三款中的“三百万元以下”修改为“五百万元以下”；增加两款分别作为第四款、第五款：“人民法院审理商标纠纷案件，应权利人请求，对属于假冒注册商标的商品，除特殊情况外，责令销毁；对主要用于制造假冒注册商标的商品的材料、工具，责令销毁，且不予补偿；或者在特殊情况下，责令禁止前述材料、工具进入商业渠道，且不予补偿。 “假冒注册商标的商品不得在仅去除假冒注册商标后进入商业渠道。” （六）将第六十八条第一款第三项修改为：“（三）违反本法第四条、第十九条第三款和第四款规定的”；增加一款作为第四款：“对恶意申请商标注册的，根据情节给予警告、罚款等行政处罚；对恶意提起商标诉讼的，由人民法院依法给予处罚。” **七、对《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作出修改** （一）将第九条修改为：“经营者不得实施下列侵犯商业秘密的行为： “（一）以盗窃、贿赂、欺诈、胁迫、电子侵入或者其他不正当手段获取权利人的商业秘密； “（二）披露、使用或者允许他人使用以前项手段获取的权利人的商业秘密； “（三）违反保密义务或者违反权利人有关保守商业秘密的要求，披露、使用或者允许他人使用其所掌握的商业秘密； “（四）教唆、引诱、帮助他人违反保密义务或者违反权利人有关保守商业秘密的要求，获取、披露、使用或者允许他人使用权利人的商业秘密。 “经营者以外的其他自然人、法人和非法人组织实施前款所列违法行为的，视为侵犯商业秘密。 “第三人明知或者应知商业秘密权利人的员工、前员工或者其他单位、个人实施本条第一款所列违法行为，仍获取、披露、使用或者允许他人使用该商业秘密的，视为侵犯商业秘密。 “本法所称的商业秘密，是指不为公众所知悉、具有商业价值并经权利人采取相应保密措施的技术信息、经营信息等商业信息。” （二）将第十七条修改为：“经营者违反本法规定，给他人造成损害的，应当依法承担民事责任。 “经营者的合法权益受到不正当竞争行为损害的，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 “因不正当竞争行为受到损害的经营者的赔偿数额，按照其因被侵权所受到的实际损失确定；实际损失难以计算的，按照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确定。经营者恶意实施侵犯商业秘密行为，情节严重的，可以在按照上述方法确定数额的一倍以上五倍以下确定赔偿数额。赔偿数额还应当包括经营者为制止侵权行为所支付的合理开支。 “经营者违反本法第六条、第九条规定，权利人因被侵权所受到的实际损失、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难以确定的，由人民法院根据侵权行为的情节判决给予权利人五百万元以下的赔偿。” （三）将第二十一条修改为：“经营者以及其他自然人、法人和非法人组织违反本法第九条规定侵犯商业秘密的，由监督检查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所得，处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五十万元以上五百万元以下的罚款。” （四）增加一条，作为第三十二条：“在侵犯商业秘密的民事审判程序中，商业秘密权利人提供初步证据，证明其已经对所主张的商业秘密采取保密措施，且合理表明商业秘密被侵犯，涉嫌侵权人应当证明权利人所主张的商业秘密不属于本法规定的商业秘密。 “商业秘密权利人提供初步证据合理表明商业秘密被侵犯，且提供以下证据之一的，涉嫌侵权人应当证明其不存在侵犯商业秘密的行为： “（一）有证据表明涉嫌侵权人有渠道或者机会获取商业秘密，且其使用的信息与该商业秘密实质上相同； “（二）有证据表明商业秘密已经被涉嫌侵权人披露、使用或者有被披露、使用的风险； “（三）有其他证据表明商业秘密被涉嫌侵权人侵犯。” **八、对《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作出修改** （一）将第五条修改为：“设定和实施行政许可，应当遵循公开、公平、公正、非歧视的原则。 “有关行政许可的规定应当公布；未经公布的，不得作为实施行政许可的依据。行政许可的实施和结果，除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或者个人隐私的外，应当公开。未经申请人同意，行政机关及其工作人员、参与专家评审等的人员不得披露申请人提交的商业秘密、未披露信息或者保密商务信息，法律另有规定或者涉及国家安全、重大社会公共利益的除外；行政机关依法公开申请人前述信息的，允许申请人在合理期限内提出异议。 “符合法定条件、标准的，申请人有依法取得行政许可的平等权利，行政机关不得歧视任何人。” （二）第三十一条增加一款,作为第二款：“行政机关及其工作人员不得以转让技术作为取得行政许可的条件；不得在实施行政许可的过程中，直接或者间接地要求转让技术。” （三）将第七十二条修改为：“行政机关及其工作人员违反本法的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其上级行政机关或者监察机关责令改正；情节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一）对符合法定条件的行政许可申请不予受理的； “（二）不在办公场所公示依法应当公示的材料的； “（三）在受理、审查、决定行政许可过程中，未向申请人、利害关系人履行法定告知义务的； “（四）申请人提交的申请材料不齐全、不符合法定形式，不一次告知申请人必须补正的全部内容的； “（五）违法披露申请人提交的商业秘密、未披露信息或者保密商务信息的； “（六）以转让技术作为取得行政许可的条件，或者在实施行政许可的过程中直接或者间接地要求转让技术的； “（七）未依法说明不受理行政许可申请或者不予行政许可的理由的； “（八）依法应当举行听证而不举行听证的。”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的修改条款自2019年11月1日起施行，其他法律的修改条款自本决定公布之日起施行。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中华人民共和国消防法》《中华人民共和国电子签名法》《中华人民共和国城乡规划法》《中华人民共和国车船税法》《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根据本决定作相应修改，重新公布。 |